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나37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나3719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단20011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C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 선고 2017. 4. 25.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단20011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머176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강제조정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5. 12. 30.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000분의 51 지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2135 판결이 형성판결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성의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2135 판결(이하 '이 사건 유류분 반환 판결'이라 함)은 법정상속분 및
법정유류분율 등에 따라 유류분을 결정한 후 원고로 하여금 B 등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금전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해당할 뿐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형성의 소로 규정한 법률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분 반환 판결은 그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을

가져오는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고 B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86조에 따라 공시되어야 제3자인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민법 제186조), B는 이 사건 유류분 반환 판결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0분의 5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게 되었을 뿐 소유권 등 물권을 갖게 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채권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이를 등기하거나 공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승정

판사김희진

판사정윤택

별지